

대한미병의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논문에 대한 심사, 편집 및 간행 업무를 담당한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 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미병의학 관련 전공 교수가 3 인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3.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년 1 회 개최한다.
6. 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수 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7. 편집위원회는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영어를 제 1 언어 사용권으로 하는 사람을 1 명 영문 편집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9. 대한미병의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원고는 2 명 이상의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에 한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심사절차 없이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10.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 원고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차기 발간 호로 게재를 변경할 수 있다
11. 각 원고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각 대학 전임 교원 또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에서 원고의 내용과 관련된 논문 발표실적이 있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 한하여 위촉한다.
12. 심사결과는 ‘80 점 이상’은 “게재가(accept)”, ‘70 점 이상, 80 점 미만’은 “수정 후 게재(minor revision)”, ‘60 점 이상, 70 점 미만’은 “수정 후 재심(major revision)”, ‘60 점 미만’은 “게재불가(reject)”로 구분한다.
13.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며,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원고는 해당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회가 수정 또는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여부를 재판정한다.
14. “수정 후 게재”는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한다.
15. “수정 후 재심”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수정 내용을 지시한 심사위원의 재심을 받는다.
16.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7.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2 명 이상 “게재가”일 경우에만 논문을 게재한다.
18. 심사는 심사규정에 맞추어 시행하며, 심사규정은 '논문체제'와 '논문의 기본요건'의 항목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논문체제'에서는 논문 주제확정 및 초록작성,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자료분

석 및 결과에 대한 토의, 문헌인용 및 고찰, 결론도출을 평가한다. '논문의 기본요건'에서는 확실성, 독창성, 객관성, 공평성, 치밀성, 정확성, 윤리성, 검증성, 용이성을 평가한다.

19.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의견과 함께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20. 심사위원이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뢰받은 원고를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21. 심사위원에게는 심사의뢰 원고에 대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